

현대건설 감리 요청 사항

1. 1999년 감사시 조회확인서와 관련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1) 현황

2000년 현대건설감사보고서상 한정이유로 삼일회계법인은 해외지점의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일부 해외금융기관등으로부터 조회확인서를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입수하지 못하였고, 대체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조회확인이 안된 해외지점의 일부금융거래 및 채권채무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2000년 현대건설감사시는 전사회적인 관심이 쏠린 때로 삼일회계법인 또한 실사에 가까운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강도 높은 감사시에는 조회서를 회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조회서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더욱 엄격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통해 계정잔액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한편 2000년 조회서 회수와 관련하여 삼일회계법인은 금융기관 137곳, 채권채무처48곳에 조회서를 발송하여 각각 85곳, 4곳이 회수되어 회수가 극히 부진하였고 극히 낮은 회수율로 인해 감사범위에 제한이 있었고 따라서 한정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4월 3일 당정회의에서 배포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결과 설명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문제점

1999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회서회수와 관련하여 감사범위에 제한이 있었다는 언급은 없으며 1999년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실히 조회에 응하는 기관은 계속적으로 조회서에 답변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즉 2000년에 조회서에 적절히 답변하지 않은 기관들은 1999년 역시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000년은 삼일회계법인이 조회서 회수를 위해 1999년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주목할 때 1999년 조회서와 관련한 감사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중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3) 감리요청사항

1999년 조회서발송과 관련한 회수율 및 미회수처에 대한 대체적 감사절차과정을 2000년도 수처와 수행절차와 비교함으로써 2000년에 있었던 감사범위 제한이 1999년에는 혹시 없었는 지 감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감

사범위제한은 감사의견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투자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손충당금설정과 관련하여

(1) 현황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 (3)에 의하면 이락정부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회사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로 인하여 장기간 미회수 되고 있고 향후 단기간내에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당기말 채권 잔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535,152백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특별손실로 계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후에 전액 회수된다고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했더니 48%정도가 현재가치로 할인되어 이를 근거로 50%의 충당금을 설정하였다고 삼일회계법인은 밝히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데 있어 회수가능성의 위험은 채무회사(이락정부)에 기인하는 것이지 채권회사(현대건설)의 상황에 영향받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이 밝힌 장기간 미회수 사유인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는 1999년에도 존재하였으며 1999년에도 단기간내에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2000년과 1999년 양년도를 놓고 볼 때 채무자인 이락정부의 상황은 크게 다를 것이 없고, 따라서 채무자의 위험에 따라 결정되는 회수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채권자인 현대건설의 상황에 따라 쌓아야 될 대손충당금 금액이 바뀐다는 것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장래가 불투명한 회사에 대해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대건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이락정부에 대한 채권을 단기간에 전액 회수할 수 있고 현대건설이 어려워지면 5년에 걸쳐 어렵게 회수된다고 판단한다면 전문가의 판단의 문제를 떠나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위한 외부감사인의 책무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와 상관없이 1999년에도 이락정부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면 1999년도의 1,200억원 손실규모는 더 커졌을 것입니다. 현대건설이 1999년에 1,2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다고 해서 감사인이 대손충당금설정에 대한 감사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리요청사항

1999년 이락정부에 대한 채권평가와 관련하여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삼일회계법인측의

설명에 따르면 당기에도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에 대해 회사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상각하였다고 합니다. 1999년에 삼일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를 하였다면 2000년에 쌓은 정도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어야 하며 2000년 회사측의 반발을 고려할 때 1999년에도 이와 유사한 회사측과 외부감사인의 견해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바람을 저버리고 외부감사인이 회사측의 요구를 부당히 수용한 적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예정원가 변동에 따른 손실반영과 관련하여

(1) 현황

현대건설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불황, 환율 및 유가의 급격한 상승, 당기중 회사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사업지연등에 의한 급격한 원가상승과 향후에 예상되는 원가상승요인을 국내외 현장의 총예정원가에 반영하여 잔여수입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미수금 585,876백만원, 재고자산 395,903백만원을 평가감하여 특별손실로 계상하였습니다.

(2) 문제점

원가상승요인은 여러가지로 볼 수 있으며 유동성위기로 인한 것은 2000년에 국한한다 할 지라도 건설경기불황, 환율 및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요인은 1999년에도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2000년 감사에 있어 더욱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하나 만약 현대건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이유로 1999년에 반영해야 될 원가상승금액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면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박광수 전무 또한 기자회견에서 1999년에 다소 낙관적으로 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백히 발생한 손실금액을 회사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외부감사인이 눈감아 주는 것은 보수적 판단기준의 정도차이가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임무해태입니다.

(3) 감리요청사항

2000년 감사보고서에 밝힌 원가상승요인 중 1999년에도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누락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원가상승금액은 없는지 면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